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0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김동아·이광희·장경태

허성무 · 김문수 · 서영교

김원이 · 송재봉 · 최기상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로는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 등이 있음.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5% 또는 10% 할인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반면, 종이상품권은 5% 할인상품권만 발행되고 있어,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의 이용이 어려운 모바일약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또한,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충전식 체

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의 제목 중 "발행의"를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온 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누리상품권의 할 인율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u>활성화</u>
지원) (생 략)		지원)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 <신 설></u>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누
		리상품권의 할인율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편익
		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
		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충
		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
		<u>상품권으로 거래할 때 발생하</u>
		는 수수료(「여신전문금융업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맹
		점수수료를 말한다)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
		점에 지원할 수 있다.